

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박승진 의원 외 20명

나. 의안번호 : 제1830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5. 27.

라. 회부일자 : 2024. 5. 30.

2. 제안사유

- 현행 조례상 점검 주기와 보고 주기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점검 주기를 명시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점검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시장 등이 매년 교통안전 체험시설 상태를 점검하도록 개정
(안 제3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4. 6. 4. ~ 6. 8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제출의견 : 원안가결¹⁾

- 현행 조례상 교통안전 체험시설 점검 주기와 보고 주기를 일치시켜 점검 및 보고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
쟁점사항 없음

1)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서 송부(교통운영과-8199, 2024.6.5.)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,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점검 주기를 명확히 하여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한 ‘교통안전 체험시설’의 점검주기를 ‘매년’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
- 「교통안전법」 제23조제3항2)에서 국가 등은 어린이,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3)에

2) 「교통안전법」 제23조(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) (① ~ ② 생략)

③ 국가등은 어린이,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등은 어린이,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서는 ‘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’ 위임하고 있음

-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‘20년 5월 현행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,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들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

-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총 13개소⁴⁾로 자치구 등 각 시설관리주체가 시설별 용도에 맞춰 직영 또는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운영 중으로

3)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19조의2(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)

① 국가 및 시·도지사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, 노인 및 장애인(이하 이 조에서 “어린이등”이라 한다)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(이하 이 조에서 “교통안전 체험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.

1. 어린이등이 교통사고 예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통의 위험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영상장치 등 시설·장비를 갖추는 것
2. 어린이등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안전한 운전방법을 익힐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추는 것
3. 어린이등이 교통시설의 운영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·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맞게 배치할 것
4.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과 일치할 것

②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4)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현황 (서울시 제출자료)

- 시설현황: 13개소

(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, 보라매 교통사고체험관, 금천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, 중계어린이교통공원, 자전거교통안전체험 학습장, 새싹어린이교통공원, 마곡안전체험관, 자전거 체험학습장, 송파 안전체험교육관, 양천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관, 서울어린이대공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등)

- 운영방법: 직영 5개소 / 위탁 8개소

서울시는 조례 제3조제2항5) 등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시설 관리주체를 통해 매년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고 미비한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보완을 권고하고 있음

- 따라서 현행 조례에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점검 주기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점검 주기에 맞춰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보여짐

5) 「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(시장 등의 책무)

-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**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**
- ③ 시장 등은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